

제226회 임시회
2004. 4. 23.(금)

검 토 보 고 서

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

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

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4년 4월 14일
- 회부일자 : 2004년 4월 16일

3. 제안이유

- 도내 소프트웨어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도가 운영하던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이관함에 따라
- 당해 사업의 일관성 유지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동안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사용하던 도유 건물을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고자,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

4. 심의사항

- 위 치 :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54-6(청주의료원 구병동)
- 규 모 : 연면적 4,368㎡(1,321평)중 2~3층 2,166㎡(655평)

- 용 도 : 도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의
창업 보육 및 경영지도
- 조 건 : 5년간 무상으로 하되 필요시 기간연장
- 신청인 :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(도 출연법인)

5. 검토의견

-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을
검토한 바

이는 충청북도에서 위탁 운영하던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폐지와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,

그동안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사용하던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54-6 (청주의료원 구병동) 도유 건물을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 임 :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